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7. 8. 8.(화) 15: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효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5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7년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제2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공개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결사항

가. 한국디엠비(주)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7-22-124)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가> ‘한국디엠비(주)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한국디엠비(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4월 13일에 (주)옴니네트웍스가 신청한 한국디엠비(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심사에 대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현황은 <표>를 보시면 신청인은 (주)옴니네트웍스이고 최다액출자자가 변경 전에는 (주)옴니텔에서 변경 후 (주)옴니네트웍스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심사 기본방향입니다. 심사 기본방향은 변경승인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변경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하고,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임을 감안하여 최다액출자자 및 특수관계자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사 경영 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 7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심사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위원회 구성(안)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심사위원회 임무는 심사 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 평가, 최다액출자자의 대표자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심사결과로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사의견 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항목은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평가는 심사위원 간 토론을 거쳐 각 심사항목과 총평에 대해 각 위원별 또는 동일 의견별로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 심사위원장은 심사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변경승인 여부 결정은 먼저 심사위

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심사기준을 토대로 신청서류 검토결과와 신청자의 의견청취 내용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고 심사 의견을 제시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심사의견을 반영하여 변경승인 여부 및 조건 등을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8월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중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 보니까 위원님들이 의견이 없으신 것 같고, 제가 과거 제3기 때도 그랬지만 지상파DMB 정책에 대해서는 한번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상파DMB가 최초 도입될 때는 모바일 방송, 지상파 디지털전환 하면서 모바일에서 시청이 안 된다고 해서 DMB를 도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와 지금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보게 되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각종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새로운 기술이 발전 하면 그 기술에 따라 미디어 신규허가를 많이 내줬는데 과연 미디어의 역할이 현저히 약화 됐을 때 이 매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활성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흐름에 따라서 사업을 접게 할 것이냐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됐고, 또 그 대표적인 매체가 DMB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지상파 계열의 DMB 사업자 3개, 비지상파 계열의 DMB 사업자가 3개가 있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 DMB에 대해서 4기에서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3기에서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물론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손해를 감수하라고 하는 정책들은 정부에서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정부와 사업자들이 협의해서 더 원만한 DMB 정책방향들을 수립하고 결정할 때가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김석진 상임위원

- 의견은 아니고 확인차 여쭙 보겠습니다.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는 배경은 회사 이름이 바뀌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원래 최다액출자자인 음니텔이 사업을 분할해서 음니텔의 일부 사업을 매각하고 음니텔의 자회사로 있던 음니네트웍스를 지주회사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는 음니텔의 대표자가 음니네트웍스의 대표자로 그대로 있고 지금도 변동 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최다액출자자 이름은 본인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대표자는 그대로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회사만 틀을 바꾸는 것입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이지요?

○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분 변화는 없지요?

○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지분은 그대로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회사 이름 간판을 바꿔 단다는 뜻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래도 심사는 다 받아야 됩니까?

○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수도권외 지상파DMB 4사가 방송사별로 고화질 DMB를 지금 현재 각 1개 채널씩 방송을 개시하고 있지요?

○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고화질 DMB 서비스를 이용하면 DMB 방송사가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라이선스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자에 시달리는 DMB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지금은 초기라서 작년에 독립DMB 3사가 8월에 론칭을 했고 KBS가 12월에 론칭을 했는데 아직은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익이 예를 들어 한국디엠비 같으면 '16년도 기준으로 10억원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는 메울 수 있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시청할 수 있는 스마트 DMB도 있긴 합니다. 그것은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라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마트 DMB가 더욱 더 활성화되고 경쟁관계가 된다면 공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화질 DMB가 방통위가 허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정책적 배려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MBC와 SBS가 지상파 UHD가 도입되면서 고화질 DMB 도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아직 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KBS는 시작했습니다만 MBC와 SBS의 고화질 DMB 도입 유보가 재허가 조건에 혹시 위반 여부가 아닌지를 검토해 주시고, 오늘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또한 시청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허가 심사 전에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안건에는 큰 이견 없습니다.

○ 류재영 지역미디어정책과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표철수 상임위원

- 따로 의견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과거 2기 방송위원회에서 이 DMB 사업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 당시 “DMB 사업자 수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도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도 수용자 입장을 생각해서 그렇게 허가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송통신 분야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그다음에 태블릿PC도 나오면서 조금 전에 고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향후 다루기로 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7-22-125~131)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나>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신고 사업자 등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함)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붙임 2>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및 제28조제1항 등을 위반한 6개사에 대해 같은 법 제76조제1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안)와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정○○에 대해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4호에 의한 시정

조치(안)을 심의·의결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조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및 이용자민원 제기, 경찰에서 통보받은 사업자 등 총 6개 사업자 및 개인 1명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한 사업자는 4개 사업자로서 (주)네오미오, 옥반식품 영농조합법인, 파타고니아코리아(주)는 해킹에 의해 회원에게 도박 문자가 발송되었거나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신고한 사항이 되겠으며, 에스알에스코리아(주)는 물품 주문번호를 변경할 때 타인의 주문정보 32건이 웹상에서 조회됐다고 신고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용자 민원제기로 조사한 1개 사업자는 (주)디지털조선게임으로 이용자가 본인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가 암호화되어 있지 않다는 사항을 인지하고 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통보를 받은 1개 사업자 및 개인 1명은 먼저 (주)주주넷 1개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 개인정보 DB를 통해서 인터넷 가입 유치를 위한 스팸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수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방통위에 통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는 차량 소유자의 신고에 따라서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경과입니다. 2016년 10월 10일부터 '17년 1월 26일까지 방통위, 중앙전파관리소, KISA에서 현장조사를 하였으며, '17년 4월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시정조치(안)를 작성하여 사전통지 및 사업자 의견을 접수받은바 있습니다. 조사결과입니다. 피심인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반사항을 보고드리면 (주)네오미오 및 다섯 번째에 있는 파타고니아코리아(주)는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또 말소한 기록을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며,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기록 6개월간 보관의무를 또한 위반하였습니다. 에스알에스코리아(주)는 홈페이지에 취약점이 있어서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검색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위반이 있었습니다. 옥반식품 영농조합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가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어서 암호화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디지털조선게임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하여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주주넷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5,088건을 파기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고 있어서 주민등록 사용제한을 위반하고, 개인정보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적용한 사항이 되어 접근통제 사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용자의 계좌번호 100만여 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여 암호화 관련 조치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정○○ 씨는 차량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해당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여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사업자 의견을 들었으며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붙임 1>에서 상세내용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하여 (주)네오미오 등 6개 사업자에 대해서 각각 시정명령을 하고자 합니다. 위반행위 즉시중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4항에 따라서 6개 사업자에 대해서 각각 시정명령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주)네오미오 등 6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별표9] 및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이하 '처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부과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을 위반한 (주)주주넷 1개 사업자에 대해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00만 원을 적용하되,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 제8조에 의한 감경사유 중 사업규모가 소규모인 사업자임을 감안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네오미오 등 6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조치 위반과 관련해서 과태료 및 과징금 병과가 가능합니다만 에스알에스코리아(주)의 경우에는 서버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시적 장애로 인한 것으로 민원 제보자와 방송국 기자 외에는 일반에 유출된 사항이 없었고, 네오미오(주), 옥반식품 영농조합법인, 파타고니아코리아(주)는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등 유출증거가 불충분하고 파급효과도 크지 않은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네오미오 등 6개 사업자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되는 기준금액 1,000만 원을 적용하되 (주)네오미오, 파타고니아코리아(주), (주)주주넷 이상 3개 사업자는 위반행위가 2개 이상으로 처리지침 제9조에 의한 가중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50%를 각각 가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주)디지털조선게임, (주)주주넷 이상 2개 사업자는 처리지침 제8조에 의한 감경사유 중 사업규모(소기업)를 감안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위치정보법 위반 관련 사항입니다. 서울 강서구 거주 정○○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차량 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하여 위치정보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였으며 같은 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별표5], 「과태료의 부과기준」 2.아.에 따라 다음과 같이 1회에 해당되는 기준금액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중·감경할 사항이 없어서 300만 원을 그대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치정보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자 및 개인 1명에 대한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은 총 7,30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시정조치(안)를 의결해 주시면 8월 중 <붙임 2> 시정조치(안)를 각각 피심인에게 통보하고 과태료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17년 하반기에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이번 심의 건은 기존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유출과 기술적·관리적 조치와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벌칙, 과징금, 과태료 부과가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앞에 2가지는 빼고 과태료 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보면 주요사업자인데 로그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유출증거가 불충분하고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조사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유출이 됐다고 신고된 것이 작년 11월, 12월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것까지 보면 그렇게 기간이 오래 경과된 것이 아닌데 조사를 충분히 한 것인지, 그 로그기록이 없으면 입증이 안 됩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보통 사업자가 서버에 개인정보 취급자든지 아니면 이용자가 접속한 로그기록이 남으면 그것을 서버에 저장을 저희가 법에 6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영세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서버에 저장하는 데이터양이 많고 서버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장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 조사한 사업자 중에서도 2개사 같은 경우에 로그기록 자체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킹 같은 경우에 유출된 데이터라든지 유출 경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로그기록이라든지 다른 DB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야 하는데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런 정확한 유출된 데이터나 경로들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로그기록 보관 안 된 것이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조사 나가셨던 분 없으십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통상 다른 사유와 달리 사건이 발생했던 시점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인과관계, 특히 유출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의 연관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황선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사무관

- 2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 갔었을 때 로그 자체를 보관하지 않고 있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킹의 경로를 추적하는 데는 로그가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됩니다. 해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시스템에 접속했는지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저희가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신고 내용으로 보면 해킹이 분명합니다. 네오미오 같은 경우에는 해킹에 의해서 회원 7,106명

에게 도박 문자가 발송된 것인데 파타고니아코리아 같은 경우도 해킹에 의해서 6,941명의 회원에게 도박 문자가 발송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로그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백업해서 보관까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로그기록이 부재하다고 해서 우리가 좀 더 과실 여부와 위법성의 경중을 따져야 되는데 그것을 따지지 못하면 물론 이 업체가 작은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간다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큰 사업자들이 의도를 가지고 로그기록을 삭제해 버린다거나 제출을 안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와는 인과관계를 앞으로 증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나쁜 선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사실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를 하려면 증거에 기반해서 부과해야 하는데 해킹해서 도박 문자가 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해킹이 됐다는 로그기록이나 접속경로를 저희가 전혀 증거를 파악하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과징금 부과하는 데에는 법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징금을 산출해 봐도 190만원 정도 과징금이 산출됩니다. 과징금을 산출하는 요건들에 충족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산출이 안 돼서 우선은 개인정보보호조치 기술적·관리적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지키지 않은 부분과의 인과관계를 굳이 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징금 관련 법 규정이 개정돼서 유출된 경우에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이 되면 과징금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출된 경우로 신고가 됐으니까 유출된 경우로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과징금 금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건수나 경로 파악이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사안이 만약에 경로나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큰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과징금을 충분히 산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규모도 작고 유출된 건수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이렇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사전에 협의했기 때문에 제재수위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합니다만 이런 사례를 잘 분석해야 합니다. 로그기록이 보관되지 않고 특히 백업기록까지 없다는 것은 명확한 법 위반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2>번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 쪽 내려보시면 '네오미오, 옥반식품 영농조합법인, 파타고니아코리아는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등 유출증거가 불충분하고 파급효과가 크지 않은 바'인데 이것은 표현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삭제하든지, 경로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을 뿐이지 네오미오는 7,100명, 파타고니아코리아는 6,900명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조사했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비교해 보면 피해자 수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파급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우리 입장에서 표현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출된 회원들, 이용자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파급효과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출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표현은 괜찮지만 문건에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 이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사업자들이 낸 의견을 보면 "사업자 대부분 유출 사실 인지 후에 신속히 조치했다. 고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관련 규정을 잘 몰랐다" 이렇게 소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사업자들의 적절하지 않는 소명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러한 인식 때문에 이용자들, 회원들 정보가 유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도 숙지와 관련된 보안 시스템을 완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사업자들에게 통보하고 또 요청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분 의견 없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김석진 상임위원

- 앞서 고 위원님께서 해킹에 대해서 꼼꼼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업체를 들여다 봤는데 에스알에스코리아의 규모가 앞서 지적된 업체는 불과 20여명, 40여명 종업원 수에 불과한데 여기는 프랜차이즈 KFC입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인데 종업원이 2,400명 가까이 되고 1년 매출액이 1,700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대규모 유명업체에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정보가 누출됐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렇게 큰 업체가 영세업체에 업데이트를 맡길 일도 없고, 외부업체에 맡겼다는 것이지요?

○ 황선철 개인정보침해조사과 사무관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매출이 큰 회사가 이렇게 허술하게 업데이트를 하다가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보통 규모가 아닌데 다른 데는 영세업체에 불과한 아주 소규모 업체에 1,500만원씩 과태료가 나가는데 이것은 거의 1,000만원 정도로 과태료를 매긴다는 것은 아무런 경고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주장한 신고내용을 보니까 주문번호를 변경할 때 다른 사람이 주문한 정보 32건만이 웹상에서 노출이 됐다, 이렇게만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맞습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업데이트 하는 과정에서 소스코드를 잘못 설정하여 원래 일반 이용자들은 접근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웹상 본인 주문번호만 넣었을 때 본인정보가 보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 주문번호를 넣었는데도 주문내용이 노출되어 설계를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것을 알고 보도를 하고 몇 시간 만에 바로 수정했습니다. 거기에 접속한 32건이 있었는데 그 32건에 접속한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기자와 제보자 외에는 홈페이지상 노출된 주문정보에 대해서 접속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를 들어 가정해 볼 때 만약 그 기자가 이것을 발견하지 않고 보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시간이 꽤 경과하는 동안 제2·제3의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전산을 업데이트 하는 일을 주기적으로 많이 할 텐데 대규모 업체가 업데이트 하는 과정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지요.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규모도 크니까 우리가 경고를 아주 따끔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취약점 관련해서 관계법령을 보면 망법 시행령에도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고시에도 보면 제4조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설서 50쪽에도 수시로 인터넷 홈페이지 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1,000만원 정도로 과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사전 예방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데에 회의가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이 건 에스알에스코리아는 최근 3년간 위반사항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최초 위반입니다. 최초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장 큰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현재 법상에서는 1,000만원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대신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지적된 사업자들은 특별히 저희가 향후에 재발방지 대책을 이행 점검할 때 더 엄격하게 하고, 해당 사업자들에게 교육도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 분들께서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첫 회의 때도 개인정보라는 측면을 굉장히 중시해서 보겠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을 크게 볼 때는 그 양이 많거나 액수가 많거나 이런 것 가지고 기준을 보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건은 단 한 사람이라도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이 유출되어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한 건은 10건보다 100건이 더 중하다, 중한 것은 맞지만 단 1건이라도 그에 대한 명확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책임을 굉장히 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령을 적용할 때도 최대한 적용해서 이런 것은 계속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여기에 보면 간단해

보입니다만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이런 것이 시정명령 내용에 포함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기간에 몇 회 정도의 교육을 가상 추정하고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원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주관 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벌칙은 없습니다만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CEO, CPO 개인정보취급자의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도 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 다든지 해서 관련자들에게 명확히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교육도 여기 표현은 '정기적인 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고 만다든지, 1년에 두 번 하고 만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명확하게 어느 정도 기간에 몇 회라는 것을 충분히 추정해서 그 계획이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그 범주 안에 들어오도록 그런 계획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허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세 분 위원께서 아주 꼼꼼하게 지적해 주셔서 저는 큰 틀의 다른 맥락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안건이 상정됐는데 이것이 4기 방통위 출범 이후 첫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정보가 사생활 비밀과 자유 그리고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해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표 위원께서 특별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빅데이터 아니면 인공지능 IoT로 대표되는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요구도 급속히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정책 관련 규제당국으로서 방통위가 개인정보보호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면서도 동시에 안전성을 강화한 개인정보의 활용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법과 제도적인 기반 조성에 나설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PIMS나 아니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인증제도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그리고 액티브엑스(ActiveX) 폐지나 본인확인 제도의 편의성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규제가 국내 사업자를 비롯해서 글로벌 사업자에 대비하면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 간의 협력 문제, 또 이런 역차별 문제 해소 대책도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보다

더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회에서도 현재 4차 산업혁명과 정보 인권을 주제로 해서 연속 토론회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통신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기능, 또한 다소 이질적인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동시에 편제되어 있는 이용자보호국 체제에서 이런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에서 개인정보보호 활용이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직제와 향후 정책 방향에 관련된 검토를 하시고 차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큰 것들은 지적이 된 것 같고 다음 안전까지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반사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2009년에 의결된 개인정보보호 의무위반자 과태료 부과 등 처리지침에 따라 하고 있는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통상 보면 기준금액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을 대부분 심결사례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도 그렇고 이 다음 안전도 그렇고 일괄적으로 50% 적용입니다. 예를 들어 30%, 40%, 50% 이렇게 차등할 수도 있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일괄적으로 50%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은 사업자니까 크게 우리가 이번에는 까다롭게 검토하지 않고 넘어갑시다만 일괄적으로 50%로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시행령상 5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그때 위원회에서 의결하신 처리지침에도 5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의결하실 때 50%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사업자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것은 검토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번 안전에 보면 사업규모가 소기업이다, 이것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규정 같고, 다음 안전에 보면 소상공인보호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기준으로 보면 이것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 해당 법률에 근거해서 용어를 가져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소기업, 소상공인….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때 의결해 주신 처리지침에 소기업보다 더 영세한 이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감경하는 쪽으로 처리지침을 의결할 때 그런 논의가 있으셨고, 이때까지 소상공인이 위반행위가 작고 경미하고 시정을 완료했을 경우에 면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에서 과태료를 산정할 때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용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른 법률에서 개념을 차용해 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 특정 개념을 만들고 그 범주에 각각의 법률에서 정의한 사업자 개념을 적용할 것인지도 한번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처리지침은 고시는 아니지요?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하신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임의로 가중·감경하지 못하도록 해서 조금 더 예측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2009년에 위원회가 의결한 다음에 크게 손을 보지는 않았지요?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몇 가지 것들 제가 지적한 것까지 포함해서 개정이라고 해야 합니까? 의결된 사항을 혹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뒤 안전까지 다 포함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 여러 지적을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성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종합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정말 보호를 잘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행정상 제재도 좀 더 엄중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 돼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 개인정보보호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빅데이터를 산업화 하는 데 있어서도 지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측면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개인정보보호는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고 위원께서 의결주문을 약간 수정해 주셨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이효성 위원장**

- 그것을 잘 반영해서...

○ **고삼석 상임위원**

- 6페이지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과급효과가 크지 않다' 이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안전을 수정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저는 이 표현을 빼고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문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관련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7-22-132~134)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붙임 2>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등을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조사배경을 보고드리면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인 통신사 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하여 방통위와 행자부가 공동 기획조사를 하였습니다. 통신사 판매점은 정보통신망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로서 같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8개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업체 선정 기준은 2016년 12월 수도권 소재, 이동전화 개통 건수 상위사업자를 8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방통위, 행자부, KISA가 행정조사를 '17년 2월 7일부터 8일까지 했습니다. 주요 조사항목은 개인정보의 수집·파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등 준수여부 중점 조사가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3월 13일 방통위에 이첩했습니다. 8개 사업자 중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서 처분요청을 해 왔고, 방통위는 시정조치(안)를 위반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5월 12일까지 접수받은바 있습니다. 피심인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위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원모바일은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숫자 4자리만으로 하는 등 비밀번호의 생성 방법이나 변경주기 등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취약점으로 인해서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검색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접근통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고시 제4항제4호, 제8호, 제9호 등을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하고 개인정보 전송구간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전송하고 직원의 개인용PC에 이용자 개인정보(파일 2,313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암호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 고시 제6항제1호, 제3호, 제4호 등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에 이용자의 가입신청서 원본 및 사본 4,300건,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내 가입신청서 16,224건 등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 총 20,524건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드림에스제이텔레콤은 직원 개인용PC에 이용자 개인정보(파일 506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적용하여 암호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고, 하나 정보는 직원 개인용PC에 이용자 개인정보(파일 92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여 암호화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붙임 1>에 첨부한바 있습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4항에 의한 시정명령을 (주)원모바일 등 3개 사업자 모두에게 하고자 합니다. 위반행위 즉시 중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주)원모바일에 대하여 하고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가중사항입니다. (주)원모바일은 위반행위가 2개 이상으로 과태료 부과 관련 처리지침 제9조에 따라 가중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하고자 합니다. 감경사항입니다. (주)원모바일은 감경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감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반사업자인 드림에스제이텔레콤과 하나정보는 위반행위가 1개인 소상공인이고 과실에 의한 경미한 위반으로 사전 의견제출 기한 내 위반사항을 이미 모두 시정 완료하였고 PC에 저장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출한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처리지침 제5조에 따라 이 건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고 시정조치 명령으로 갈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태료 부과 관련 처리지침 제5조를 밑에 적시해 놓았는데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공중에 유출 또는 노출되지 않은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거나 단순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미한 위반사항인 경우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년간 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조치로 갈음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종 과태료 산출내역입니다. (주)원모바일에 대해서는 기준금액 1,000만원, 가중금액 500만원 해서 총 1,5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드림에스제이텔레콤과 하나정보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벌칙사항입니다. (주)원모바일은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하거나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이용하였으므로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이 위반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3조제1의2호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신분증 스캐너 인식을 위해 이용자의 신분증 사본을 편집하여 출력하는 신분증 위조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위반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이첩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시정조치(안)를 의결해 주시면 사업자에게 각각 통보하고 '17년 하반기에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우선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조사와 처벌이 정보통신망법 우리 소관 법률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에서 보면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인 통신사 판매점에 대해서 우리와 행자부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공동 기획조사한 것입니다.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주요 배경과 윗부분을 보면 절차상으로 행자부가 현장조사 결과 이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된 것이지요?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지금 행자부에 파견 나가 있는 방통위 직원과 같이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보고는 행자부가 우리 위원회에 이첩한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처리해야 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같이 기획해서 공동조사 했고 무엇보다도 우리 소관 법률에 따라서 우리 소관 관련된 사업자를 점검·조사하는 것입니다. 번거롭게 왜 이렇게 받느냐는 것입니다. 행자부는 오프라인에서의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개인정보 관련된 정책은 물론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통신사 판매점에 대해서 기획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조사도 같이 나갔는데 번거롭게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저희가 판매점만 하는 경우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데 이 건은 행자부가 판매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종에 대해서 그 당시 부동산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업종에 대해서 기획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보고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판매점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한 건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조사 개요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를 검토한 것 중 통신사 판매점에 관한 부분만 우리에게 통보한 것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사배경이나 조사대상 이것으로 보면 조사 경과 처리 과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그 이후 66개 통신사 판매점을 별도로 기획점검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방통위에서 직원 2명이 행자부 개인정보 담당으로 파견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쪽 분야를 같이 조사해서 이첩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조사 경과에는 전혀 그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수도권에 소재하는 통신사 판매점 중에 개통건수가 상위인 소위 영업을 잘하는 8개 판매점에 대한 기획조사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8개로 한정된 것은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업종을 하면서 조사인력이나 조사기간의 한계 때문에 대표적인 업체로 제한을 해서 8개사에 대해서 조사했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이후에 저희가 방통위 단독으로 60여개사에 대해서 조사했었습니다. 조사한 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자들에게 행정처분 예고를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아마 다음달 중에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시중에 전국적으로 2만여개 판매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샘플 조사식으로 해서 과연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아마 행자부와도 공동으로 기획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방통위에서 개인정보 기획점검은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O2사업자, 통신사 판매점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몰 등 금년에 계획된 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불안감이 있습니다. 개통을 할 때 신분증을 쥐서 스캔을 해서 그것을 원모바일에서는 보관하고 칼라로 인쇄해서 그것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신분증 위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것이 몇 건이나 된다고 나왔습니까? 신분증 사본을 칼라프린트로 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서버….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총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16,000건, 그리고 가입신청 사본이 약 4,000여건 총 2만여 건인데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건수는 정확히….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사업자의 시스템 내에 첨부서류로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사업자도 이것이 그런 첨부파일이 있는 건수를 자기들이 정확하게 이 시스템을 위탁 줘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만 카운트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 저희도 조사를 하면서 그 <붙임>에 있는 첨부서류를 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건수로만 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건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것이 혹시 수도권에 소재하는 통신사 판매점이 개통건수가 상위에 기록될 정도로 영업을 잘하는 이유가 혹시 이런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자기들이 활용하고 재활용하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합니까? 영업을 잘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추정하기로는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다가 저희 단말기 지원금이나 장려금이 사업자들이 인상한 그 시점에 가입자를 유치하는, 편법·불법적인 가입자 유치행위에 활용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정확히 저희가….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런 것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또 이용자 차별이 생기는 바로 근본원인이 이런 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격하게 보관을 못하고 바로바로 폐기 처분하고 평문으로 저장 못하게 암호화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다 그렇게 망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영업을 잘하는 판매점이 뭔가 위법·탈법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 전수 조사를 못하니까 과연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용자들이 불안해하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핸드폰을 바꾸러 갔을 때 새로운 핸드폰으로 교체하면서 거기에 있는 입력자료를 다 옮기지 않습니까? 서버에 저장했다가 빼더라고요. 그럴 때 그 기록이 그 사람의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보낸 것이 일단 저장됐다가 이쪽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책으로 연결해서 A 구 핸드폰에서 B 신 핸드폰으로 넘어올 때, 그러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무처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핸드폰을 교체할 때 전화번호부 저장번호를 신 핸드폰에 다운 받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때는 해당 전화번호부 파일에 있는 것만 옮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용자 고객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판매점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거치기 때문에 그것이 불안하더라고요. 우리가 단속하는 주체니까 그런 부분도 혹시 들여다보니까?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판매점에 대한 불법지원금 단속이나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조사할 때 개인용PC를 다 한 번씩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발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용자들이 갖는 공통된 불안감일 것입니다.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판매점이나 아니면 통신사의 메인 서버로 넘어가서 보관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이것은 제가 과문한 탓에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파악이 되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셔도 좋고 그런 공통된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면 이동통신사의 판매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작년부턴서 거의 다 100% 보급을 했습니다. 판매점에서는 신분증 사본을 복사해서 보관하거나 남겨 놓도록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없었습니다. 신분증을 스캔해서 넣으면 신분증 스캔된 정보가 이동통신사 본사 시스템에 바로 저장되도록 되어 있고 판매점에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남아 있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런 행위들은 거의 없어지거나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작년부터 해서 금년까지 오프라인 판매점에는 다 보급을 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원모바일에 남아 있는 것은 언제 것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2010년 6월 5일부터 개인정보가 시스템에 남아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제도개선 이후에는 많이 이런 것들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표철수 상임위원**
 - 우리가 인력이 많다면 아마 수도권에 8군데가 아니고 20군데 이상 조사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랬으면 아마 더 많은 사례들이 적발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휴대폰 판매업소는 대부분 직원들이 2명 내지 3명입니다. 모든 업소가 판매량이 많다고 해도 이 규정에 따르면 소상공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단 수도권뿐만 아니고 지방 대도시에도 이와 같이 판매량이 많은 판매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은 우리 조사 역량이 못 미치는 것이지요. 우리 역량에서 벗어난 이른바 사각지대라는 것입니다. 가령 지역사무소가 있으면 조사가 가능합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저희가 지역 관할 소관기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 중앙전과관리소의 각 지역사무소 직원들에게 협조 요청을 해서 조사가 지역에서 위반사항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전국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는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방송통신 분야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정책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앙의 기구만 가지고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특히 단속사례, 여기에서는 최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정책이 아주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이것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더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같이 잘 검토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가 보강해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저는 이번 건에 관련해서 퍼센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개통 상위 8건 가운데 3건이 적발된 것이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허 옥 부위원장

- 그렇게 보면 약 35%가 넘어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같은 비율로 전수조사를 한다면 적어도 약 30~40%는 이런 행태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는 다르지만 좀 전에 말씀하실 때도 추가 조사해 보니까 60여개 회사가 적발됐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규제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이런 지속단속을 계속 하면 그때의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2~3명의 직원을 지낸 소규모의 수탁판매나 아니면 일부 대리점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행태, 대부분 보면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안 된 평균으로 암호화가 안 된다거나 아니면 접근통제가 안 된다거나 이런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거나 이 문제와 관련된 중요성을 못 깨달아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조직이 없는 부족한 것도 있지만 규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속을 어떻게 하면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규제를 접근하면 퍼센트를 완전히 줄이고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성을 높일까, 그 문제를 조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관련된 의견은 어떠십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정보통신망법이 작년에 개정되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수탁자를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 및 교육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작년에 개정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점 같은 경우에도 재위탁한 것인데 이통사들이 실질적으로 조금 더 관리 감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사업자가 협회나 사업자들 단체 중심으로 자유규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판매점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항목들을 설명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통사가 판매점의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점검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한다든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 중에 있고, 이번 시범 실시하는 결과를 받아서 다른 제도적이거나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다시 보고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인터넷 쇼핑몰, 통신사 판매점, 텔레마케팅업체 등 5개 분야를 협회·단체와 협의해서 저희 정보통신망법상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켜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공통사항 70~80여개 또 특수 분야 사항 20여개 해서 자율규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에게 다 뿌려주고 업체 해당 개인정보취급자 자기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하고 협회나 단체에서 소속 관련기관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우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의 수탁사 판매점, 복대리 하고 있는 판매점 이런 사업자들에 대해서 오늘 조사결과 그다음에 다음에 기획조사 했던 60여개 이상의 판매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통사와 협의해서 소속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협의해서 한번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인정보침해조사과가 금년 2월에 신설됐습니다만 직원이 과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7명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거의 200만개 이상 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160여만개 이상이 되고 거의 300여만개 이상의 사업자들 지도 단속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엄격하게 지도하면서 자율규제도 강화하고 또 교육도 하고 개인정보 투자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통위 4기의 정책 방향도 고민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좀 전에 이야기해 주신 것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일 것 같은데 이번에 3개 적발된 업체 말고 추가로 60여개, 작년 실적 다 봐서 어느 이통사의 수탁판매 대리점들이 훨씬 더 적발 건수가 많은지 정확한 적발된 업체의 분류와 기준치를 놓고 이통사에게 자율규제를 훨씬 더 해 나가는 강제, 권고사항이 되고 적발의 비율이나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 훨씬 더 이통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들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분석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다만, 대리점의 경우에는 소관 이통사가 있는데 판매점의 경우에는 3개 사업자를 전부다 팔고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매출액을 보니까 판매사들이 1명당 맨 첫 번째 원모바일은 3억원 가까이 되고, 두 번째 것은 2억 1,000만원, 세 번째 것은 7,500만원 이 정도인데 평균 하면 2억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의 수익이 얼마인지, 한 사람당 1년에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조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국회의 김성태 의원께서 단말기 완급자급제를 추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추진되면 법제화 돼서 완전자급제로 가면 이 사람들 거의

직업에서 멀어지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그것이 다른 측면에서는 이용자들에게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의 직업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하여도 잘 파악해서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단말기자급제가 기본적으로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데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계가 되는지, 이것을 벌어서 누가 다 가져가는 것인지, 거기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피고용인들일 텐데 그런 것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가는 것에 우리 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무엇인지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의 기본적 입장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발의 법안이 저희까지는 접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된 법안은 원래 법안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되겠고,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장려금 규제 사후 규제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면 저희 소관인데 법안 내용과 향후 법안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개진할 의견을 검토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벌써 많은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는데 우리가 꼭 고유 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관 기구로서 조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고삼석 상임위원**

- 잘 아시겠지만 통신 분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비자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10대 민원을 보더라도 항상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온라인, 포털, 쇼핑, 게임 이런 분야와 더불어서 통신분야는 개인정보를 상당히 많이 수집하는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신분증 스캐너를 작년 9월에 도입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신분증 스캐너, 즉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면 개인정보 유출 부분도 상당히 방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일부 판매점에서 이동통신 단품상품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방송통신 결합상품이나 부가서비스 가입 권유를 하는 불법 마케팅에 이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용자들로부터 동의받지 않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겠지만 이것처럼 이동통신 단품상품에 가입한 가입자의 정보를 어차피 회사들이 결합상품도 팔고 별도 부가서비스도 판매하다 보니까 그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 동의받지 않고 현재 공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일정 정도 기간을 정해서 폐기하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번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동통신 단품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거나 그것을 가지고서 결합상품이나 부가서비스 이쪽 마케팅에 이용하는 사례가 없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어떤 민원인의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원이라는 것, 아시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한 분의 사례지만 그분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렇게 몇 년 동안 해결하려고 쫓아다녔겠습니까? 한 분의 사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개인정보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업무처리를 잘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통신 3사들이 잘 관리하도록, 정보량이 돈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 조차도 많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고삼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기점검을 통해서 보관하지 않아야 할 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적절하게 다 폐기하도록 잘 지도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 타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는 8월 1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시 56분 폐회 】